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80
----------	-----

2025. 3. 21.(금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안치영 의원 등 7인
- 나. 발의일자 : 2025년 3월 4일
- 다. 회부일자 : 2025년 3월 5일
- 라. 상정일자 : 2025년 3월 13일
 -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 · 의결
- 마. 주요내용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안치영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관광약자의 범위에 임산부, 영유아, 영유아동반자, 어린이, 이동약자를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
- 오인용된 조례의 제명을 바로잡아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관광약자에 임산부, 영유아, 영유아동반자, 어린이, 이동약자를 포함(안 제2조)

○ 인용조례의 제명을 수정(안 제6조)

- 「충청북도 사무위탁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

○ 본 조례안은 기존 “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”으로 정의되던 관광약자의 범위를 “영유아, 영유아 동반자, 어린이 및 이동약자 등”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 달성과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으로, 이를 통해 영유아 및 이동약자 등이 불편함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또한, 잘못 인용된 조례의 제명을 올바르게 수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조례 운영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, 별다른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

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임산부”를 “임산부, 영유아동반자, 어린이, 이동약자(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「충청북도 사무위탁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.
1. “관광약자”란 장애인, 노인, <u>임산부</u>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	1. ----- <u>임산부, 영유아, 영유아동반자, 어린이, 이동약자(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한다)</u> ----- ----- ----- -.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6조(관광환경 조성지원) ①·② (생략)	제6조(관광환경 조성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「 <u>충청북도 사무위탁조례</u> 」에 따른다.	③ ----- ----- 「 <u>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</u> 」----.